

## [참고자료 2] 출판 표준계약서 모음

- <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 설문지 10번 문항 관련

2017. 6. 1.

본 참고자료는 출판계 8개 단체가 공동기획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 설문지 10번 문항에 대한 이해와 출판사 자체의 확인, 점검을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10쪽에 있는 “출판 표준계약서 종류별 조항 비교”를 통해 기사에서 활용하는 출판 관련 표준 계약서가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11~93쪽에 실려 있는 각종 표준 계약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단체에서는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래 표준 계약서 중 주로 어느 것을 사용하십니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계약 유형별(1~7)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보기 번호를 오른쪽 □ 안에 기입해 주세요.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특정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출판사 자체 계약서’에 표시하십시오.)

계약 유형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문체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서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표준계약서	한국출판인회의 표준계약서	출판사 자체 계약서
(제정일)	2014. 6. 12	2014. 10. 30.	2012. 10. 17.	2012. 3. 27.	-
<b>10-1</b> 단순출판허락	① 단순출판허락계약서	②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③
<b>10-2</b> 독점출판허락	① 독점출판허락 계약서	②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③
<b>10-3</b> 출판권 설정	① 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 출판권 설정 계약서		③
<b>10-4</b> 배타적 발행권 설정	①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②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책만 계약)	⑤
<b>10-5</b>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②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④
<b>10-6</b> 기타 저작권 사용			①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사용계약서		②
<b>10-7</b> 저작권 양도	①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② 저작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③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④

## 출판 표준계약서 종류별 조항 비교

### 10-1. 단순출판허락 계약서

①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문체부, 2014.10.30.)
제1조(이용허락) 제2조(저작물의 이용) 제3조(저작물 이용기간 등) 제4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제5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6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7조(교정) 제8조(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제9조(저작권의 표시 등) 제10조(평가, 판형, 제책방식 등) 제11조(계속 출판의 의무) 제12조(저작권사용료 등) 제13조(선급금) 제14조(갑에 대한 증정본 등) 제15조(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제16조(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제17조(원고의 반환) 제18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1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0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제21조(재해, 사고) 제22조(비밀 유지) 제23조(개인정보의 취급) 제24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25조(분쟁의 해결)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대상) 제3조(이용허락 기간) 제4조(권리자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확인 및 보증)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제9조(손해배상) 제10조(비용의 부담) 제11조(분쟁해결) 제12조(비밀유지) 제13조(기타부속합의) 제14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15조(계약 효력 발생일)

## 10-2. 독점출판허락 계약서

① 독점출판허락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문체부, 2014.10.30.)
제1조(이용허락) 제2조(저작물의 이용) 제3조(저작물의 이용기간 등) 제4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제5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6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7조(교정) 제8조(저작물의 수정증감 등) 제9조(저작권의 표시 등) 제10조(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제11조(계속 출판의 의무) 제12조(저작권사용료 등) 제13조(선급금) 제14조(갑에 대한 증정본 등) 제15조(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제16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제17조(저작재산권, 이용권의 양도 등) 제18조(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제19조(원고의 반환) 제20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2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2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제23조(재해, 사고) 제24조(비밀 유지)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 제26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27조(분쟁의 해결)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대상) 제3조(이용허락 기간) 제4조(권리자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확인 및 보증)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제9조(손해배상) 제10조(비용의 부담) 제11조(분쟁해결) 제12조(비밀유지) 제13조(기타부속합의) 제14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15조(계약 효력 발생일)

### 10-3. 출판권 설정 계약서

① 출판권설정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출판권설정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p>제1조(출판권의 설정) 제2조(출판권의 등록) 제3조(배타적 이용) 제4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제5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8조(교정) 제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제10조(저작권의 표시 등) 제11조(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제12조(계속 출판의 의무) 제13조(저작권사용료 등) 제14조(선급금) 제15조(갑에 대한 증정본 등) 제16조(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제17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제18조(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제19조(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제20조(원고의 반환)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3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24조(재해, 사고) 제25조(비밀 유지)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제27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28조(분쟁의 해결)</p>	<p><u>기본 조항</u> 제1조(출판권의 설정) 제2조(출판권 설정의 등록)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제4조(대가의 지급)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의 존속기간) <u>‘갑’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6조(‘갑’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에의 수록)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제11조(교정) <u>‘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제13조(발행 책임) 제14조(정가, 발행부수 등)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제16조(저작권자의 표시) 제17조(저작물의 수정·증감과 통지 의무) 제18조(발행·판매 부수의 보고 등) 제19조(원고의 반환) <u>기타 조항</u> 제20조(비용 부담) 제21조(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질권 설정) 제22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제23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의 소멸) 제24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제25조(비밀 유지)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제27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28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30조(소송의 합의 관할) 제31조(특약 조항)</p>

## 10-4.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

유의사항 : ‘③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전자책만 계약하는 경우)’와 ‘④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기존의 종이책 계약이 있는 경우)’는 본문의 조항 수 와 조항 제목이 똑같다. 밑줄 친 제11조의 내용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①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③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전자책만 계약하는 경우)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④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기존의 종이책 계약이 있는 경우)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제1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2조(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제3조(배타적 이용) 제4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제5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8조(교정) 제9조(저작물의 수정 증감 및 비용부담) 제10조(저작권의 표시 등) 제11조(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제12조(계속 발행 등의 의무) 제13조(저작권사용료 등) 제14조(선급금) 제15조(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제16조(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제17조(원고의 반환)	<u>기본 조항</u> 제1조(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2조(배타적 발행권 설정의 등록)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제4조(대가의 지급)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u>‘갭’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6조(‘갭’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에의 수록)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제11조(교정) <u>‘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제13조(발행 책임)	제1조(배타적 발행권 설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제4조(유효기간과 갱신) 제5조(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제6조(원고 인도와 전송 개시) 제7조(2차적 저작물) 제8조(저작자의 책임) 제9조(전송의 의무와 권리 등) 제10조(비용 부담) 제11조(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 저작권 사용료로서 판매 회수에 따른 정가	제1조(배타적 발행권 설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제4조(유효기간과 갱신) 제5조(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제6조(원고 인도와 전송 개시) 제7조(2차적 저작물) 제8조(저작자의 책임) 제9조(전송의 의무와 권리 등) 제10조(비용 부담) 제11조(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 저작권 사용료로서 본 저작물의 종이책 출판권

<p>①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p>	<p>②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p>	<p>③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전자책만 계약하는 경우)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p>	<p>④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기존의 종이책 계약이 있는 경우)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p>
<p>제18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1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0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제21조(재해, 사고) 제22조(비밀 유지) 제23조(개인정보의 취 급) 제24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25조(분쟁의 해결)</p>	<p>제14조(정가, 발행수량 등)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제16조(저작권자의 표 지 등) 제17조(저작물의 수정 · 증감과 통지 의무) 제18조(발행·전송 수 량의 보고 등) 제19조(원고의 반환) <u>기타 조항</u> 제20조(비용 부담) 제21조(저작권재산권 또 는 배타적발행권의 양 도·질권 설정) 제22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제23조(계약의 해지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 제24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25조(비밀 유지) 제26조(개인정보의 취 급) 제27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28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30조(소송의 합의 관할) 제31조(특약 조항)</p>	<p><u>총액의 ( )%를 '갑'에게 지급한다.</u> 제12조(저작물 홍보) 제13조(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p>	<p><u>설정 계약서에 명시된 종이책 1권당 지급받을 인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u> 제12조(저작물 홍보) 제13조(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p>

## 10-5.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③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제1조(권리의 설정) 제2조(권리의 등록) 제3조(배타적 이용) 제4조(권리의 존속기간) 제5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8조(교정) 제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제10조(저작권의 표시 등) 제11조(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제12조(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의무) 제13조(저작권사용료 등) 제14조(선급금) 제15조(갑에 대한 증정본 등) 제16조(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제17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제18조(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제19조(판면파일 또는 발행 데이터의 매수 요청) 제20조(원고의 반환)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3조(권리 소멸 후의 배포) 제24조(재해, 사고) 제25조(비밀 유지)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u>기본 조항</u> 제1조(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2조(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제4조(대가의 지급)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u>‘갑’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6조(‘갑’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에의 수록)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제11조(교정) <u>‘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제13조(발행 책임) 제14조(정가, 발행수량 등)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제16조(저작권자의 표시) 제17조(저작물의 수정 . 증감과 통지 의무) 제18조(발행 . 판매 수량의 보고 등) 제19조(원고의 반환) <u>기타 조항</u> 제20조(비용 부담) 제21조(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제1조(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제4조(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제5조(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제6조(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기한) 제7조(2차적 저작물) 제8조(저작자의 책임) 제9조(출판.배포.전송의 의무와 판매의 권리 등) 제10조(비용의 부담) 제11조(출판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이하 ‘인세’- 등) 제12조(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제13조(‘갑’에 대한 기증) 제14조(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양도 등) 제15조(재해.사고 등의 손실 처리) 제16조(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③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제27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28조(분쟁의 해결)	. 질권 설정) 제22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제23조(계약의 해지와 출판 권 . 배타적발행권의 소멸) 제24조(출판권 . 배타적발행 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 포) 제25조(비밀 유지)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제27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28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30조(소송의 합의 관할) 제31조(특약 조항)	



## 10-6. 기타 저작권 사용

①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u>기본 조항</u>
제1조(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2조(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제4조(대가의 지급)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u>‘값’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6조(‘값’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예의 수록)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제11조(교정)
<u>‘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u>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제13조(발행 책임)
제14조(정가, 발행수량 등)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제16조(저작권자의 표지)
제17조(저작물의 수정 . 증감과 통지 의무)
제18조(발행 . 판매 수량의 보고 등)
제19조(원고의 반환)
<u>기타 저작권 사용 조항</u>
<b>제20조(2차적 사용)</b>
<b>제21조(부차적 수익의 배분)</b>
<u>기타 조항</u>
제22조(비용 부담)
제23조(저작권재산권 또는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 질권 설정)
제24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제25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소멸)
제26조(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27조(비밀 유지)
제28조(개인정보의 취급)
제29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30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32조(소송의 합의 관할)
제33조(특약 조항)

## 10-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유의사항 : ‘②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와 ‘③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는 본문의 조항 수와 조항 제목이 똑같다. 계약서 제목과 밑줄 친 제3조의 내용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①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2014.6.12.)	②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문체부, 2014.10.30.)	③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문체부, 2014.10.30.)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록) 제3조(양도인의 의무) 제4조(양도 유효기간)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 에 따른 책임) 제6조(완전원고의 양도) 제7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9조(비용의 부담) 제10조(저작재산권 양도의 대 가) 제11조(갑에 대한 증정 등) 제12조(제3자에 대한 저작재 산권의 양도 등) 제13조(원고의 반환) 제14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16조(분쟁의 해결)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대상) 제3조(저작재산권 양도범위) : <u>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                      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u> 제4조(양도 기간) 제5조(양도인의 의무) 제6조(양수인의 의무) 제7조(확인 및 보증)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제) 제10조(손해배상)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2조(분쟁해결) 제13조(비밀유지) 제14조(기타부속합의)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16조(계약 효력 발생일)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대상) 제3조(저작재산권 양도범위) : <u>(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                      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                      한다.</u> 제4조(양도 기간) 제5조(양도인의 의무) 제6조(양수인의 의무) 제7조(확인 및 보증)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제) 제10조(손해배상)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2조(분쟁해결) 제13조(비밀유지) 제14조(기타부속합의)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16조(계약 효력 발생일)

# 10-1 단순출판허락

## ①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6.12.제정]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sup>1)</sup>을 체결한다.

<b>저작자의 표시</b>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b>저작재산권자의 표시</b>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b>저작물의 표시</b>	
제호(가제) : _____	
<b>저작물의 내용 개요 :</b>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 제2조 (저작물의 이용)

-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있다.
-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_\_\_\_\_년간 존속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_\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

1)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_\_\_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갑은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 ① 갑은 을이 출판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을 증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을은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증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증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을은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 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_\_\_\_\_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3조 (선금금)

-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한다.
- ③ 을은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금금을 공제한다.

#### 제14조 (갑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_\_\_부, 중쇄 발행 시 \_\_\_\_\_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 제15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17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 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_\_\_\_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 1. 완전원고 판단 기준

2. 검인지 부착 여부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원고의 반환 여부
5.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6.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_\_\_\_월 \_\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_\_\_\_\_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자의 표시(을)**

주 소 :  
 출판사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성명 : ----- (인)

## ②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10.30.제정]

###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 (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sup>2)</sup>작성권

####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권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

2)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	- 1차 : - 2차 : - 3차 :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정액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원
		<input type="checkbox"/> 분할	
	<input type="checkbox"/> 정률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예:월) -----원
		<input type="checkbox"/>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매출이익	-----%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1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권리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10-2 독점출판허락

### ① 독점출판허락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6.12.제정]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점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_____	

#### 제1조 (이용허락)

-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출판할 것을 허락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독점적·비배타적으로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 제2조 (저작물의 이용)

-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저작물의 이용기간 등)

- ① 이 계약에 따른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_\_\_\_\_년간 존속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_\_\_개

3) 저작재산권자가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이용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독점적이지만 비배타적인 이용권을 부여하고, 출판사는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 설정출판권으로서의 준물권적 효력이 아닌 채권적 효력만 미치는 계약유형이다.

월 자동 연장된다.

####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갑은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등)

- ① 갑은 을이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증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을은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증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9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증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을은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 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_\_\_\_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선급금)**

-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한다.
- ③ 을은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갑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부, 중쇄 발행 시 \_\_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전집 또는 선집 또는 등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저작권재산권, 이용권의 양도 등)**

-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_\_\_\_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전원원고 판단 기준
2. 검인지 부착 여부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5. 판면파일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6. 원고의 반환 여부
7. 계약기간만료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8.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_\_\_월 \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_\_\_\_\_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을)

주 소 :  
출판사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인)



## ②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10.30.제정]

###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 (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sup>4</sup>작성권

####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

4)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원
		□ 분할	(예:월) -----원
	□ 정률	□ 매출액	-----%
		□ 매출이익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년 -----월 -----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년 --월 --일까지 이용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사실을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1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권리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10-3 출판권 설정

### ① 출판권 설정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6.12.제정]

####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sup>5)</sup>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_____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 제2조 (출판권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 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 (배타적 이용)

-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1년간 존속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자동 연장된다.

####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갑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함)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 ① 갑은 을이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증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증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증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을은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 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_\_\_\_\_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③ 갑은 납본, 증명,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한다.
- ③ 을은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갑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_\_\_부, 중쇄 발행 시 \_\_\_\_\_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권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_\_\_\_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 1. 출판권 등록 여부
-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 3. 검인지 부착 여부
-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 5.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 6. 판면파일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 7. 원고의 반환 여부
- 8.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년 \_\_\_월 \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_\_\_\_\_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을)**

주 소 :  
 출판사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성명 : ----- (인)

## ② 출판권 설정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제정]

### 출판권 설정 계약서

[2012. 8. 21. 대한출판문화협회 제11차 상무이사회 승인]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복제권자의 표시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저작물의 이름	제호(가제) :
저작물의 종류 (괄호 안에 ○표시)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기타_____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복제권자\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출판권자\_\_\_\_\_ (이하 '을'이라 함)는(은) 위에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 조항

**제1조(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저작물'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함)를 설정한다.

② 전항을 포함한 본 계약 전부에서 출판권에는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은 제외된다.

③ 제1항에서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즉,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을'은 출판권자가 되며,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출판권 설정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본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① '갑'은 제1조의 이용에 있어서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출판용 데이터(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출판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조의 규정은 '갑'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본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용	지급시기
저작권 사용료	실제 판매 부수 × 정가 × ( )% [또는] 실제 판매 부수 × (일금 _____ 원)	( )개월마다
최소보증부수와 계약금(선급금)	최소 보증 부수 : _____ 부 계약금(선급금): 일금 _____ 원	(1)계약 시( )% : 일금 _____ 원 (2)맨 처음 출판 시 : 일금 _____ 원
기타		

- ② 전항에서 최소 보증 부수와 계약금(선급금)을 정한 경우에는 ‘을’은 맨 처음의 출판 이후에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선급금)을 공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을’이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고·홍보, 판매촉진, 기타 업무(납본·증정·신간 안내·서평 등)에 이용할 경우
  2. ‘을’이 출판물의 유통 과정에서 파손, 오손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폐기 처분한 부수
- ④ ‘을’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상세한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의 출판일까지와 맨 처음의 출판일 후 만 \_\_\_\_\_ 년[또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② 또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문서로 계약 종료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속되며, 유효기간은 \_\_\_\_\_ 년씩 연장된다.

③ 제1조에 따라 설정된 ‘을’의 출판권은, 본조에서 정하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 존속한다.

#### ‘갑’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6조(‘갑’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명확히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제호의 저작물을 제1조의 방식으로는 스스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도 제1조의 방식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저작물의 전부를 ‘갑’이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을 포함함)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전송 부분이 상당하여 본건 출판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으며,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의 출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예의 수록)**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이 본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갑’이 본저작물의 저작권자(또는 본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② '갑'은 계약 시에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본 계약과 중첩되는 저작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며, 본저작물의 복제·배포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을'에게 보증한다.
-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본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 ② 본저작물이 권리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 '을'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과 부담을 지고 처리한다.
-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갑'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본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물건(원도·원화·사진 등을 포함하며, 이하 '완전원고'라 줄임)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정)** ① 본저작물의 내용 교열 및 교정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 있다.
- ② '갑'이 '을'에게 내용 교열 및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을'이 이를 수락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

-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①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을'이 본저작물의 제호, 내용·표현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다.
- ② '갑'이 저작자인 경우, '갑'은 본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13조(발행 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제10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이내[또는 \_\_\_\_\_년 \_\_\_\_월까지] 본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출판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본저작물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4조(정가, 발행부수 등)** ①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을'은 출판물의 정가, 맨 처음 발행부수를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 ③ '을'은 출판물의 장정·크기 등 외형적인 사항, 추가 발행의 시기 및 홍보·광고·판매의 방법 등 영업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④ '을'은 본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관행에 따라 본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 ②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출판의 계속 기간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6조(저작권자의 표지)** ① '을'은 '갑'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저작물의 각각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복제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을'은 각각의 복제물에 복제권자의 검인은 부착하지 아니한다.
- ③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의 복제물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명, 국제표준자료번호(또는 콘텐츠식별체계)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한다.

**제17조(저작물의 수정·증감과 통지 의무)** ① ‘을’이 출판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저작자가 수정·증감을 신청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18조(발행·판매 부수의 보고 등)** ① ‘을’은, 본저작물을 발행할 때에 발행 부수와 그 판매 부수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전항의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의 증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본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조항

**제20조(비용 부담)** ① 본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완전원고의 인도 후 또는 맨 처음의 출판 이후에 추가하여 출판할 시에 제17조에 따라 ‘갑’ 또는 저작자가 요청하는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질권 설정)** ① ‘갑’은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갑’·‘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저작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의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을’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때에 ‘을’의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① 출판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이 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 중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② 출판권이 소멸된 때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 중 전항의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본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본 출판물의 제작·광고·선전·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갑’의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경력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8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본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 ‘갑’과 ‘을’은 협력하여 이에 대처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②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따라 조리에 맞게 성의를 다해 해결한다.

**제30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과 ‘을’사이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특약 조항)**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특약은 별도의 특약 조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약 사항 :

\_\_\_\_\_  
\_\_\_\_\_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로 1부를 더 작성하여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 체결일 : \_\_\_\_\_년 \_\_\_\_월 \_\_\_\_일

**복제권자의 표시(‘갑’)**

주 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용도 :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성 명 : \_\_\_\_\_(인)  
계좌번호 : \_\_\_\_\_은행 [용도 : 저작권 사용료 지급]

**출판권자의 표시(‘을’)**

주 소 : \_\_\_\_\_  
출판사명 : \_\_\_\_\_(인)  
대표자 성명 : \_\_\_\_\_(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출판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판사명란에 법인인감(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 10-4 배타적 발행권 설정

### ①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6.12.제정]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sup>6)</sup>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다만,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제2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 (배타적 이용)

- ①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및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①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 발행일까지, 그리고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_\_\_\_년간 존속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_\_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갑은 \_\_\_\_\_년 \_\_월 \_\_일까지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 ① 갑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해 을이 다시 발행등으로 이용하거나 을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원
-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을은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_\_\_\_\_원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을은 갑에게 매출액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② 을은 \_\_\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을이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갑은 임의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였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 (선급금)**

-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② 을은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귀속된다.
- ② 갑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을의 발행데이터를 갑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데이터 원본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0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_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자 표시 방법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6.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판매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년 \_\_\_\_월 \_\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_\_\_\_\_ 원을 정히 영수함 (인)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회 사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 (인)

## ②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제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2012. 9. 18. 대한출판문화협회 제13차 상무이사회 승인]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이름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종류 (괄호 안에 ○표시)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기타 _____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저작재산권자 \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배타적발행권자 \_\_\_\_\_ (이하 ‘을’이라 함)는(은) 위에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 조항

- 제1조(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함)를 설정한다.
- ② 전항을 포함한 본 계약 전부에서 배타적발행권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된다.
- ③ 제1항에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말하며, 본 계약에서는 이를 통틀어 ‘전자출판’이라 한다.
1. 본저작물의 내용을 편집·복제하여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전용단말기·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전송하는 것
  2. CD-ROM, DVD-ROM, 메모리카드 등 전자적 매체(향후 개발될 어떠한 기술에 의한 것도 포함함)에 기록한 패키지 출판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
  3.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중(公衆)에게 전송하는 것(본저작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열람하게 하는 것을 포함함)
  4.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열람에 제공하는 것
- ④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을’은 배타적발행권자가 되며,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전자출판할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⑤ ‘갑’은, ‘을’이 본저작물을 본조에 따른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제3자에게 제 허락하는 것을 승낙한다.

[주] 본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 조항입니다.  
가진다.

**제2조(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본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① ‘갑’은 제1조의 이용에 있어서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전자출판용 데이터(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출판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조의 규정은 ‘갑’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본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용	지급시기
저작권 사용료	실제판매횟수×전자출판물정가×(____) % [또는] 실제판매횟수×(일금 _____ 원)	(____) 개월마다
최소보증횟수와 계약금(선급금)	최소보증횟수 : _____ 계약금(선급금): 일금 _____ 원	(1) 계약 시(____ %) : 일금 _____ 원 (2) 맨 처음 발행·전송시 : 일금 _____ 원
기타		

② 전항에서 최소 보증횟수와 계약금(선급금)을 정한 경우에는 ‘을’은 맨 처음의 전자출판 이후에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선급금)을 공제한다.

③ ‘을’이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고·홍보, 판매촉진, 기타 업무(납본·증정·신간 안내·서평 등)에 전자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④ ‘을’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상세한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의 전자출판일까지와 맨 처음의 전자출판일 후 만 \_\_\_\_\_ 년 [또는 \_\_\_\_\_ 년 \_\_\_\_\_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또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문서로 계약 종료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속되며, 유효기간은 \_\_\_\_\_ 년씩 연장된다.

③ 제1조에 따라 설정된 ‘을’의 배타적발행권은, 본조에서 정하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 존속한다.

**‘갑’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6조(‘갑’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명확히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제호의 저작물을 제1조의 방식으로는 스스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도 제1조의 방식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저작물의 전부를 ‘갑’이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을 포함함)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전송 부분이 상당하여 본건 전자출판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을 전자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전자출판하도록 할 수 없으며,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의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에의 수록)**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이 본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전자출판할 경우에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갑’이 본저작물의 저작권자(또는 본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② ‘갑’은 계약 시에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본 계약과 중첩되는 저작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며, 본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을’에게 보증한다.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본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본저작물이 권리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 ‘을’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과 부담을 지고 처리한다.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갑’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본저작물의 전자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물건(원도·원화·사진 등을 포함하며, 이하 ‘완전원고’라 줄임)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교정)** ① 본저작물의 내용 교열 및 교정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 있다.

② ‘갑’이 ‘을’에게 내용 교열 및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을’이 이를 수락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①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을’이 본저작물의 제호, 내용·표현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다.

② ‘갑’이 저작자인 경우, ‘갑’은 전자출판 및 기타 전자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본저작물의 가공 또는 개변(改變), 표제와 키워드 등을 부가하는 것 등을 사전에 ‘을’에게 허락한다.

③ ‘갑’이 저작자인 경우, ‘갑’은 본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3조(발행 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제10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_개월 이내에[또는 \_\_\_\_\_년 \_\_\_\_월까지] 본저작물의 전자출판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본저작물이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정가, 발행수량 등)** ①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을'이 직접 전자출판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을'은 전자출판물의 정가, 전송 방법 및 이용 조건, 맨 처음 발행수량을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 ③ '을'은 전자출판물의 장정·크기 등 외형적인 사항, 추가 발행의 시기 및 홍보·광고·판매의 방법 등 영업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④ '을'은 본 전자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관행에 따라 본저작물을 계속하여 전자출판하여야 한다.

- ②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전자출판의 계속 기간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자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저작물의 각각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을'은 각각의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검인은 부착하지 아니한다.
- ③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의 복제물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명, 국제표준자료번호(또는 콘텐츠식별체계)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한다.

**제17조(저작물의 수정·증감과 통지 의무)** ① '을'이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다시 전자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을'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전자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맨 처음의 전자출판 후 \_\_\_\_\_개월마다 한 번씩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저작자가 수정·증감을 신청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18조(발행·전송 수량의 보고 등)** ① '을'은, 본저작물을 발행·전송할 때에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전송 횟수와 실제 계약체결 횟수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전항의 발행·전송 횟수와 실제 계약체결 횟수의 증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본저작물의 전자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조항

**제20조(비용 부담)** ① 본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② 완전원고의 인도 후 또는 맨 처음의 전자출판 이후에 추가하여 전자출판할 시에 제17조에 따라 '갑' 또는 저작자가 요청하는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질권 설정)** ① '갑'은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본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갑'·'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

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저작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전자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전자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을’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때에 ‘을’의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이 기간 중에 만들어진 복제물 중 그 대가에 상응하는 수량의 복제물을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②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때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만들어진 복제물 중 전항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복제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본저작물의 전자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본 전자출판물의 제작·광고·선전·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갑’의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경력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8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본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 ‘갑’과 ‘을’은 협력하여 이에 대처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②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따라 조리에 맞게 성의를 다해 해결한다.

**제30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과 ‘을’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특약 조항)**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특약은 별도의 특약 조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약 사항 :

---

---



---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로 1부를 더 작성하여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계약 체결일 : \_\_\_\_\_년 \_\_\_\_월 \_\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용도 :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성 명 : \_\_\_\_\_ (인)  
계좌번호 : \_\_\_\_\_ 은행 \_\_\_\_\_ [용도 :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_\_\_\_\_  
출판사명 : \_\_\_\_\_ (인)  
대표자 성명 : \_\_\_\_\_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출판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판사명란에 법인인감(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 ③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전자책만 계약)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제정]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참조 : 전자책만 계약하는 경우)

저작물명: \_\_\_\_\_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_\_\_\_\_을(를) '갑'이라 하고 배타적 발행권자 \_\_\_\_\_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배타적 발행권 설정)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을'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전송'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에 기반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인터넷 및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책(e-book)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3조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유효기간과 갱신)

- ① 이 계약에 의한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본 저작물을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까지 그리고 최초 디지털 파일 제작 완료일로부터 \_\_\_\_\_년 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 ② 계약 만료일 \_\_\_\_\_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_\_\_\_\_년씩 연장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만료일의 도래를 \_\_\_\_\_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전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계약 만료일 이후 \_\_\_\_\_ 이내에 중단하여야 하지만, 구매자가 이미 전송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5조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 ①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을’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원고 인도와 전송 개시)**

- ① ‘갑’은 ‘을’에게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 그림, 사진, 기타 자료의 수집·정리는 ‘갑’이 책임진다. 이 경우 ‘갑’은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을’은 ‘갑’에게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다.
- ③ 원고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판매 부적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송 개시가 늦어질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2차적 저작물)**

-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재수록을 포함하여 번역, 번안, 만화,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으로 배분한다.
- ③ 본 저작물의 번역물이 해외에 판매(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으로 배분한다. 단, ‘갑’이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해외 번역판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2차적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제1조 및 제3조, 제4조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저작자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만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전송의 의무와 권리 등)**

- ① ‘을’은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판매(전송)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 ③ ‘갑’은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 ④ ‘을’은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갑’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비용 부담)**

-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사진·그림·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을’은 본 저작물의 편집·교정·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 저작권 사용료로서 판매 회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_\_\_\_\_%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갑’에게 고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언제든지 판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물 홍보)**

‘을’이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파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기간, 범위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갑’ 또는 ‘을’이 저작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사정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설정등록용 1부 포함)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갑” 성명:	(인)	“을”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주소:			

## ④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기존 종이책 계약이 있는 경우)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제정]

###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참조 : 기존의 종이책 계약이 있는 경우)

저작물명: \_\_\_\_\_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_\_\_\_\_을(를) '갑'이라 하고 배타적 발행권자 \_\_\_\_\_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배타적 발행권 설정)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을'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전송'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에 기반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인터넷 및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책(e-book)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3조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유효기간과 갱신)

- ① 이 계약에 의한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본 저작물을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까지 그리고 최초 디지털 파일 제작 완료일로부터 \_\_\_\_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 ② 계약 만료일 \_\_\_\_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_\_\_\_년씩 연장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만료일의 도래를 \_\_\_\_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전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계약 만료일 이후 \_\_\_\_이내에 중단하여야 하지만, 구매자가 이미 전송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5조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 ①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을’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원고 인도와 전송 개시)**

- ① ‘갑’은 ‘을’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 그림, 사진, 기타 자료의 수집·정리는 ‘갑’이 책임진다. 이 경우 ‘갑’은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을’은 ‘갑’에게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다.
- ③ 원고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판매 부적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송 개시가 늦어질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2차적 저작물)**

-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재수록을 포함하여 번역, 번안, 만화,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으로 배분한다.
- ③ 본 저작물의 번역물이 해외에 판매(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으로 배분한다. 단, ‘갑’이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해외 번역판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2차적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제1조 및 제3조, 제4조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 제8조 (저작자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만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9조 (전송의 의무와 권리 등)

- ① ‘을’은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판매(전송)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 ③ ‘갑’은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 ④ ‘을’은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갑’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제10조 (비용 부담)

-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사진·그림·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을’은 본 저작물의 편집·교정·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 저작권 사용료로서 본 저작물의 종이책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명시된 종이책 1권당 지급받을 인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종이책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디지털 파일 판매가격과 무관하다.

- ②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갑’에게 고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언제든지 판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물 홍보)**

‘을’이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파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기간, 범위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갑’ 또는 ‘을’이 저작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사정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설정등록용 1부 포함)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갑” 성명:	(인)	“을”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주소:			

## 10-5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 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6.12.제정]

#### 5.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권리의 설정)**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및 배포)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제2조 (권리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저작재산권자가 종이책 출판권 및 전자책(e-Book), 오디오북 등의 발행 등을 위한 배타적 발행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종이 출판물 및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 및 전송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 효력을 갖는 계약. 이용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제3조 (배타적 이용)

- ①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권리의 존속기간)

-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_\_\_개월 자동 연장된다.

###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갑은 \_\_\_\_\_년 \_\_\_월 \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 ① 갑 또는 저작자는 을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값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값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값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값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 원
- ③ 을은 출판물 및 전송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값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의무)

- ①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출판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_부 이하, 전송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_\_\_\_\_원 이하가 될 경우, 값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을은 값에게 출판물의 경우 정가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전송물의 경우 매출액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값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 및 전송물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값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값은 임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 또는 매출액을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③ 값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값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4조 (선금금)

-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값에게 지급한다.
- ② 출판의 경우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한다.
- ③을은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금금을 공제한다.

**제15조 (갑에 대한 증正本 등)**

-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_\_부, 중쇄 발행 시 \_\_\_\_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권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의 매수 요청)**

-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을의 발행데이터를 갑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제23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 또는 출판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_\_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제28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배타적발행의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5. 출판물의 검인지 부착 여부
6. 디지털 발행물의 저작권 표지 방법
7.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8.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9. 원고의 반환 여부

10.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또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전송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년 \_\_\_월 \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_\_\_\_\_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회 사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_\_\_\_\_ (인)

## ②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제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2012. 10. 17. 대한출판문화협회 제14차 상무이사회 승인]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이름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종류 (괄호 안에 ○표시)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기타_____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저작재산권자 \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출판권자 겸 배타적발행권자 \_\_\_\_\_ (이하 ‘을’이라 함)는(은) 위에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 조항

**제1조(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저작물’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함)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함)를 설정한다.

② 제1항에서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즉,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말하며, 본 계약에서는 이를 통틀어 ‘전자출판’이라 한다.

1. DVD-ROM, 메모리카드 등 전자매체(향후 개발될 어떠한 기술에 의한 것도 포함함)에 기록한 패키지 출판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
2.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중(公衆)에게 전송하는 것(본저작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함)
3.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열람에 제공하는 것

④ 제1항에 따라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을’은 출판권자 겸 배타적발행권자가 되며,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전자출판할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본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① ‘갑’은 제1조의 이용에 있어서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



⑤ ‘갑’은, ‘을’이 본저작물을 본조에 따른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제3자에게 재허락하는 것을 승낙한다.

**[주] 본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 조항입니다.**

성된 출판용 . 전자출판용 데이터(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 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출판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조의 규정은 ‘갑’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본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용		지급시기
저작권사 요금	출판물	실제 판매 부수 × 정가 × ( )% [또는] 실제 판매 부수 × (일금 _____원)	( )개월마다
	전자 출판물	실제 판매 횟수 × 전자출판물 정가 × ( )% [또는] 실제 판매 횟수 × (일금 _____원)	( )개월마다
최소 보증 수량과 계약금(선급금)	( )부 × 예상정가( ) × ( )% =일금 _____원		(1)계약 시( )% : 일금 _____원 (2)맨 처음 발행 또는 전송 시 : 일금 _____원
기타			

② 전항에서 최소 보증 수량과 계약금(선급금)을 정한 경우에는 ‘을’은 맨 처음의 출판 또는 전자출판 이후에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선급금)을 공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을’이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고 . 홍보, 판매촉진, 기타 업무(납본·증정·신간 안내·서평 등)에 이용할 경우

2. ‘을’이 출판물의 유통 과정에서 파손, 오손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폐기 처분한 수량

④ ‘을’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상세한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의 출판일 또는 전자출판일까지와 맨 처음의 출판일 또는 전자출판일 후 만 \_\_\_\_\_년[또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② 또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문서로 계약 종료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속되며, 유효기간은 \_\_\_\_\_년씩 연장된다.

③ 제1조에 따라 설정된 ‘을’의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본조에서 정하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 존속한다.

**‘갑’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6조(‘갑’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에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명확히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제호의 저작물을 제1조의 방식으로는 스스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도 제1조의 방식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저작물의 전부를 ‘갑’이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을 포함함)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전송 부분이 상당하여 본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경우를 포함함)에는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전자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 또는 전자출판하도록 할 수 없으며,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의 출판 또는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에의 수록)**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이 본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출판 또는 전자출판할 경우에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갑’이 본저작물의 저작권자(또는 본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② ‘갑’은 계약 시에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본 계약과 중첩되는 저작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며, 본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을’에게 보증한다.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본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본저작물이 권리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 ‘을’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과 부담을 지고 처리한다.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갑’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본저작물의 출판 또는 전자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물건(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하며, 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교정)** ① 본저작물의 내용 교열 및 교정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 있다.

② ‘갑’이 ‘을’에게 내용 교열 및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을’이 이를 수락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①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을’이 본저작물의 제호, 내용, 표현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다.

② ‘갑’이 저작자인 경우, ‘갑’은 출판 또는 전자출판 및 기타 전자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본저작물의 가공 또는 개변(改變), 표제와 키워드 등을 부가하는 것 등을 사전에 ‘을’에게 허락한다.

③ ‘갑’은 본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3조(발행 책임)**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10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이내[또는 \_\_\_\_\_년 \_\_\_\_월까지] 본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출판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본저작물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10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_개월 이내에[또는 년 \_\_\_\_\_월까지] 본저작물의 전자출판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본저작물이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정가, 발행수량 등)** ①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을'이 직접 전자출판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을'은 출판물 . 전자출판물의 정가, 전송 방법 및 이용 조건, 맨 처음 발행부수 . 발행횟수를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④ '을'은 출판물 . 전자출판물의 장정 . 크기 등 외형적인 사항, 추가 발행의 시기 및 홍보 . 광고 . 판매의 방법 등 영업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⑤ '을'은 본 출판물 . 전자출판물을 홍보 . 광고함에 있어 '갑'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관행에 따라 본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 . 전자출판하여야 한다.

②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출판 . 전자출판의 계속 기간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자의 표시)**

① '을'은 '갑'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저작물의 각각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을'은 각각의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검인은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의 복제물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명, 국제표준자료번호(또는 콘텐츠식별체계)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한다.

**제17조(저작물의 수정 . 증감과 통지 의무)** ① '을'이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다시 출판 . 전자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전자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맨 처음의 전자출판 후 \_\_\_\_\_개월마다 한 번씩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저작자가 수정 . 증감을 신청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18조(발행 . 판매 수량의 보고 등)** ① '을'은, 본저작물을 발행 . 전송할 때에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 전송 횟수와 그 판매부수 . 실제계약체결횟수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전항의 발행부수 . 전송 횟수와 그 판매부수 . 실제계약체결횟수의 증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본저작물의 출판 . 전자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조항

**제20조(비용 부담)** ① 본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완전원고의 인도 후 또는 맨 처음의 출판·전자출판 이후에 추가하여 출판·전자출판할 시에 제17조에 따라 '갑' 또는 저작자가 요청하는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재산권 또는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양도·질권 설정)** ① '갑'은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갑'·'을'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저작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출판권 설정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전자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전자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을'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때에 '을'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출판권·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①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이 기간 중에 만들어진 복제물 중 그 대가에 상응하는 수량의 출판물이나 복제물을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②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때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이나 복제물 중 전항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출판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본저작물의 출판·전자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본 출판물·전자출판물의 제작·광고·선전·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갑'의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경력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8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본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 ‘갑’과 ‘을’은 협력하여 이에 대처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②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따라 조리에 맞게 성의를 다해 해결한다.

제30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과 ‘을’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_\_\_\_\_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특약 조항)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특약은 별도의 특약 조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약 사항 :

\_\_\_\_\_  
\_\_\_\_\_  
\_\_\_\_\_  
\_\_\_\_\_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출판권 설정과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로 2부를 더 작성하여 출판권 설정과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용으로 각각 사용한다.

계약 체결일 : \_\_\_\_\_년 \_\_\_\_월 \_\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용도 :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성 명 : \_\_\_\_\_(인)  
계좌번호 : \_\_\_\_\_은행 \_\_\_\_\_ [용도 : 저작권 사용료 지급]

출판권자 겸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_\_\_\_\_  
출판사명 : \_\_\_\_\_(인)  
대표자 성명 : \_\_\_\_\_(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출판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판사명란에 법인인감(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 ③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한국출판인회의, 2012.3.27. 제정]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저작물명: \_\_\_\_\_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_\_\_\_\_을(를) ‘갑’이라 하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자 \_\_\_\_\_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전송에 관하여 전세계에 걸쳐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을’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 ③ 이 계약에서 말하는 ‘전송’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에 기반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인터넷 및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책(e-book)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포함)의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 ① 이 계약에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본 저작물의 초판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발행일로부터 \_\_\_\_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 ②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한 경우 전송권은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까지 그리고 최초 디지털 파일 제작 완료일로부터 \_\_\_\_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 ③ 계약 만료일 \_\_\_\_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_\_\_\_년씩 연장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만료일의 도래를 \_\_\_\_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저작물의 개정판, 증보판(출판 및 디지털 파일 제작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경우 그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 기간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을’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소멸된 후에도 계약 유효기간 중에 인쇄된 재고도서를 배포할 수 있다. 전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계약 만료일 이후 \_\_\_\_ 이내에 중단하여야 하지만, 구매자가 이미 전송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5조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을’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기한)**

- ① ‘갑’은 ‘을’에게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 그림, 사진, 기타 자료의 수집·정리는 ‘갑’이 책임진다. 이 경우 ‘갑’은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을'은 '갑'에게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본 저작물을 출간한다. 단, 공중송신(전송)의 이용에 의한 디지털 도서의 발행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원고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발행 부적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판이 늦어질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발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7조 (2차적 저작물)

-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재수록을 포함하여 번역, 변안, 만화,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으로 배분한다.
- ③ 본 저작물의 번역물이 해외에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으로 배분한다. 단, '갑'이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해외 번역판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2차적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제1조 및 제4조, 제5조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저작자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만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9조 (출판.배포.전송의 의무와 판매의 권리 등)

- ① '을'은 본 저작물을 출판.배포.전송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물 및 디지털 파일 판매(전송)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 ③ '갑'은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 ④ '을'은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갑'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사진.그림.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을’은 본 저작물의 편집.교정.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출판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이하 ‘인세’- 등)**

- ① 이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_\_\_\_\_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은 인세의 일부(선금)로 충당한다.
- ② ‘을’은 본 저작물의 판매부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_\_\_\_\_%를 인세로서 ‘갑’에게 지급한다. 이때 납본용.증정용.신간안내용.서평용.홍보용 등으로 무가 배포된 부수는 제외한다.
- ③ ‘을’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갑’에게 고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 관례에 따라 인지 첨부는 생략한다. ‘을’은 본서의 판매 상황이나 발행 부수에 대해 ‘갑’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동일 사용자의 이종 단말기 이용에 따른 복수 전송은 1회로 본다) 저작권 사용료로서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인세와 동일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종이책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디지털 파일 판매가격과 무관하다.
- ②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갑’에게 고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언제든지 판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갑’에 대한 기증)** ‘을’은 ‘갑’에게 초판 발행시 \_\_\_\_\_권을 기증하고, 중쇄 발행 때마다 \_\_\_\_\_권씩 기증한다.

**제14조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양도 등)** ‘갑’ 또는 ‘을’이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재해.사고 등의 손실 처리)**

- ① 천재지변, 전란, 화재, 기타 ‘을’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본 저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배포 또는 진열중인 도서의 소실·유실·침수·파손·낙장, 또는 위탁거래인의 파산, 기타에 의한 손실이 통상적인 한도 이상일 경우 ‘을’은 그 손실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사정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설정등록용 1부 포함)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갑” 성명:	(인)	“을”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주소:			

## 10-6 기타 저작권 사용

### ①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10.17. 제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계약서  
[2012. 10. 17. 대한출판문화협회 제14차 상무이사회 승인]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이름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종류 (괄호 안에 ○표시)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기타 _____(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저작재산권자 \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출판권자 겸 배타적발행권자 \_\_\_\_\_ (이하 ‘을’이라 함)는(은) 위에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 조항

제1조(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저작물’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함)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함)를 설정한다.

② 제1항에서 ‘출판’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즉,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말하며, 본 계약에서는 이를 통틀어 ‘전자출판’이라 한다.

1. DVD-ROM, 메모리카드 등 전자매체(향후 개발될 어떠한 기술에 의한 것도 포함함)에 기록한 패키지 출판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
2.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중(公衆)에게 전송하는 것(본저작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함)
3.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열람에 제공하는 것

④ 제1항에 따라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을’은 출판권자 겸 배타적발행권자가 되

⑤ ‘갑’은, ‘을’이 본저작물을 본조에 따른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제3자에게 재허락하는 것을 승낙한다.

[주] 본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 조항입니다.

며,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전자출판할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본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① ‘갑’은 제1조의 이용에 있어서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출판용 . 전자출판용 데이터(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 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출판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조의 규정은 ‘갑’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본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용	지급시기
저작권 사용료	출판물	실제 판매 부수 × 정가 × ( )% [또는] 실제 판매 부수 × (일금 _____ 원)	( )개월마다
	전자 출판물	실제 판매 횟수 × 전자출판물 정가 × ( )% [또는] 실제 판매 횟수 × (일금 _____ 원)	( )개월마다
최소 보증 수량과 계약금(선급금)		( )부 × 예상정가( ) × ( )% =일금 _____ 원	(1)계약 시( )% : 일금 _____ 원 (2)맨 처음 발행 또는 전 송시 : 일금 _____ 원
기타			

② 전항에서 최소 보증 수량과 계약금(선급금)을 정한 경우에는 ‘을’은 맨 처음의 출판 또는 전자출판 이후에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선급금)을 공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을’이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고 . 홍보, 판매촉진, 기타 업무(납본·증정·신간 안내·서평 등)에 이용할 경우
2. ‘을’이 출판물의 유통 과정에서 파손, 오손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폐기 처분한 수량

④ ‘을’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상세한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의 출판일 또는 전자출판일까지와 맨 처음의 출판일 또는 전자출판일 후 만

\_\_년[또는 \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 ② 또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문서로 계약 종료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속되며, 유효기간은 \_\_년씩 연장된다.
- ③ 제1조에 따라 설정된 ‘을’의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본조에서 정하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 존속한다.

#### ‘갑’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6조(‘갑’ 또는 제3자에 의한 유사 저작권 등의 이용 제한)** ①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명확히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제호의 저작물을 제1조의 방식으로는 스스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도 제1조의 방식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저작물의 전부를 ‘갑’이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을 포함함)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전송 부분이 상당하여 본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경우를 포함함)에는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전자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 또는 전자출판하도록 할 수 없으며, 본저작물을 개정 또는 증보한 저작물의 출판 또는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전집 또는 편집물 등에의 수록)**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이 본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출판 또는 전자출판할 경우에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체결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갑’이 본저작물의 저작권자(또는 본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② ‘갑’은 계약 시에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본 계약과 중첩되는 저작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며, 본저작물의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을’에게 보증한다.

**제9조(내용에 대한 보증)** ① ‘갑’은 ‘을’에게 본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본저작물이 권리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 ‘을’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과 부담을 지고 처리한다.

**제10조(완전원고의 인도)** ‘갑’은 \_\_\_\_\_년 \_\_월 \_\_일까지 본저작물의 출판 또는 전자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물건(원고 . 원화 . 사진 등을 포함하며, 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교정)** ① 본저작물의 내용 교열 및 교정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 있다.

② ‘갑’이 ‘을’에게 내용 교열 및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을’이 이를 수락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제12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①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을’이 본저작물의 제호, 내용 . 표현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다.

② ‘갑’이 저작자인 경우, ‘갑’은 출판 또는 전자출판 및 기타 전자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

위에서 본저작물의 가공 또는 개변(改變), 표제와 키워드 등을 부가하는 것 등을 사전에 '을'에게 허락한다.

- ③ '갑'은 본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3조(발행 책임)**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10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이내[또는 \_\_\_\_\_년 \_\_\_월까지] 본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출판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본저작물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10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이내에[또는 년 \_\_\_월까지] 본저작물의 전자출판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본저작물이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정가, 발행수량 등)** ①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을'이 직접 전자출판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을'은 출판물 . 전자출판물의 정가, 전송 방법 및 이용 조건, 맨 처음 발행부수 . 발행횟수를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④ '을'은 출판물 . 전자출판물의 장정 . 크기 등 외형적인 사항, 추가 발행의 시기 및 홍보 . 광고 . 판매의 방법 등 영업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⑤ '을'은 본 출판물 . 전자출판물을 홍보 . 광고함에 있어 '갑'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속 발행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관행에 따라 본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 . 전자출판하여야 한다.

②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_\_\_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출판 . 전자출판의 계속 기간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자의 표지)**

① '을'은 '갑'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저작물의 각각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을'은 각각의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검인은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의 복제물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명, 국제표준자료번호(또는 콘텐츠식별체계)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한다.

**제17조(저작물의 수정 . 증감과 통지 의무)** ① '을'이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본저작물을 다시 출판 . 전자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전자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맨 처음의 전자출판 후 \_\_\_\_\_개월마다 한 번씩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저작자가 수정 . 증감을 신청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18조(발행·판매 수량의 보고 등) ① ‘을’은, 본저작물을 발행·전송할 때에 \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전송 횟수와 그 판매부수·실제계약체결횟수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전항의 발행부수·전송 횟수와 그 판매부수·실제계약체결횟수의 증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본저작물의 출판·전자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기타 저작권 사용 조항**

제20조(2차적 사용)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저작물’을 번역·개작·다이제스트, 연극·영화·방송·녹음·녹화·대여 등, 그 밖에 이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갑’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을’에게 위탁한다. 다만, 추가 약정 사항에서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제21조의 부차적 수익 비율에서 저작권자(‘갑’)의 수익 비율을 100%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을’에게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부차적 수익의 배분)**

① 2차적 이용 등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 ‘을’은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부차적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익의 배분은 특약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갑’의 수익 비율	‘을’의 수익 비율	별도 협의시 (○표시)
(1) 출판물 판면을 이용한 복제(복사/ 사진 복사/ scan을 통한 전자매체에의 입·출력)	%	%	
(2) 복제·배포물의 전송(※‘을’이 전자출판하는 경우는 제외)	%	%	
(3) 출판물의 Reprint	%	%	
(4) 출판물의 특별판 발행(촉쇄판, 다이제스트판, 발췌본)	%	%	
(5) 출판물의 북클럽 판 발행	%	%	
(6) 출판물의 제3자에 의한 DM 판매, 방문 판매	%	%	
(7) 신문, 잡지 등에 연재	%	%	
(8) 오디오북 발행	%	%	
(9) 저작물의 번역, 개작	%	%	
(10) 저작물의 영화화, 드라마화	%	%	
(11) 저작물의 부분 이용 허락	%	%	
(12) 디지털 파일의 납본 보상금	%	%	
(13) 장래의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이용	%	%	
(14)	%	%	

③ 본조에서 ‘수익’이라 함은 ‘을’이 직접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을’은 부차적 수익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갑’의 몫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차적 수익이 미미할 경우에는 제4조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조항**

제22조(비용 부담) ① 본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완전원고의 인도 후 또는 맨 처음의 출판·전자출판 이후에 추가하여 출판·전자출판할

시에 제17조에 따라 ‘갑’ 또는 저작자가 요청하는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저작권재산권 또는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양도·질권 설정)** ① ‘갑’은 본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등의 처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갑’·‘을’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저작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출판권 설정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전자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전자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을’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때에 ‘을’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출판권·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①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이 기간 중에 만들어진 복제물 중 그 대가에 상응하는 수량의 출판물이나 복제물을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②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때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이나 복제물 중 전항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출판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본저작물의 출판·전자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본 출판물·전자출판물의 제작·광고·선전·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갑’의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경력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0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본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 ‘갑’과 ‘을’은 협력하여 이에 대처한다.



제3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②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따라 조리에 맞게 성의를 다해 해결한다.

제3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과 ‘을’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3조(특약 조항)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특약은 별도의 특약 조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약 사항 :

\_\_\_\_\_  
\_\_\_\_\_  
\_\_\_\_\_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출판권 설정과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로 2부를 더 작성하여 출판권 설정과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용으로 각각 사용한다.

계약 체결일 : \_\_\_\_\_년 \_\_\_\_월 \_\_\_\_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용도 :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성 명 : \_\_\_\_\_(인)  
계좌번호 : \_\_\_\_\_은행 \_\_\_\_\_ [용도 : 저작권 사용료 지급]

출판권자 겸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_\_\_\_\_  
출판사명 : \_\_\_\_\_(인)  
대표자 성명 : \_\_\_\_\_(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출판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판사명란에 법인인감(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 10-7 저작권 양도

### ①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6.12.제정]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sup>8)</sup>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_____	

제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	포함 여부 (○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8)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된 복제 및 배포, 전송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이용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이용자는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제2조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인의 의무)** 갑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양도 유효기간)**

- ① 갑이 을에게 양도한 저작권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_\_\_\_년간 을에게 귀속한다.<sup>9)</sup>
-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을에게 양도한 저작권재산권은 갑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5조 (저작권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 ① 갑은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양도대상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권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갑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완전원고의 양도)** 갑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갑이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을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0조 (저작권재산권 양도의 대가)**

-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_\_\_\_\_원을 지급한다.
- ② 저작권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_\_\_\_\_

---

9)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위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을에게 귀속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조항은 필요 없음.

\_\_\_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갑에 대한 증정 등)**

- ① 을은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복제물 \_\_\_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 ② 갑은 제1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을은 갑에 대하여 원고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 1.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여부
-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3. 저작재산권 양도료 송금 방법
- 4.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 5. 원고의 반환 여부
- 6. 저작재산권 양도효력 소멸 후의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 7.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년 \_\_\_월 \_\_\_일

**저작재산권자(양도인)의 표시(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_\_\_\_\_ (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일금 \_\_\_\_\_원을 정히 영수함 (인)

**양수인의 표시(을)**

주 소 :

업 체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입 회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_\_\_\_\_ (인)

## ② 저작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4.10.30.제정]

#### 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sup>10</sup>작성권

##### 제3조 (저작권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권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

10)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정액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원
		<input type="checkbox"/> 분할	
	<input type="checkbox"/> 정률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예:월) -----원
		<input type="checkbox"/>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매출이익	-----%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	- 1차 :
		- 2차 :
		- 3차 :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기타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③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10.30.제정]

#### 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저작권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제3조 (저작권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권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sup>11)</sup>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1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권이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정액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원
		<input type="checkbox"/> 분할	
	<input type="checkbox"/> 정률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예:월) -----원
		<input type="checkbox"/>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매출이익	-----%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	- 1차 :
		- 2차 :
		- 3차 :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기타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